

창원지방법원 2024. 5. 30 선고 2023나103240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재판경과

창원지방법원 2024. 5. 30 선고 2023나103240 판결

창원지방법원 2023. 2. 7 선고 2021가단4720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A

피고, 항소인 B

변론종결 2024. 4. 25.

판결선고 2024. 5. 30.

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. 2. 7. 선고 2021가단4720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,

가. 창원시 의창구 D 전 321㎡ 지상 목조 칼라강판지붕 단층주택 25.78㎡, 목조 스텔트지붕 창고 9.91㎡를 각 철거하고, 위 대지 321㎡를 인도하고,

나. 2022. 10. 12.부터 위 가.항 기재 대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연 4,750,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1심판결문 3면 2행과 3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.

『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오랜 기간 거주하였으므로 사회상규상 원고로부터 이사비용 또는 최소한의 합의금으로 2,1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, 원고가 이를 지급하여야 할 법적인 근거가 없고 위와 같은 주장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사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.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.』

○ 제1심판결문 3면 4행의 “이 법원의”를 “제1심 법원의”로 고쳐 쓴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박애경, 판사 김은엽, 판사 김주미